

수수료(제18조 관련)

산정방법: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인증서 발급료: 50,000원
2.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인증을 위한 시험수수료: 인증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험항목별로 정한 금액
3.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및 건축물의 인증을 위한 평가수수료: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항 목	산정 명세
인건비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 단가 중 "전기" 혹은 "정보통신" 부문을 적용하고, 고급기술자 1명의 임금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출장비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상당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각종 경비	인건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기술료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